

### 산업자원부공고제2000-62호

석유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액화석유가스(프로판 및 부탄) 최고판매가격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9-70호, '99. 6. 3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7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국내액화석유가스(프로판 및 부탄) 최고판매가격  
고시중개정

###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국내 액화석유가스(프로판 및 부탄) 최고판매가격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격연동제품의 수입·정유사 판매가격의 최고액은 “나”항의 산식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주기는 1개월 단위로 조정하며, 적용기간은 가격 조정 해당월 1일 0시부터 차기조정 전월 말일 24시까지로 하되, 원료비가격 기준으로 가격변동폭이 ±3%를 초과 변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한다.

제1조제1항제2호 나목 주:(2) 및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제기준가격(FOB)은 직전월의 프로판 및 부탄의 사우디아라비아 공시가격(CP) 물량복합평균값을 적용하며, 프로판 및 부탄의 물량은 당해연도 민수용수입수요물량비율을 적용한다.

(소숫점이하 여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kg로 표시)

(3) 환율은 미국달러의 전신회계도율을 기준으로 가격조정 전전월 26일부터 전월 25일까지의 날짜 단 순평균치를 적용한다.

(소숫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로 표시)

#### 부 칙

이 고시는 2000년 7월 1일 0시부터 시행한다.

### 대통령령 제16,921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2000년 7월 27일

국무총리 이한동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김영호

장관

###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조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5호를 삭제한다.

3. “주유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등유 또는 경유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4. “일반판매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사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점포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계량용기(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량누새검탱크를 말한다)에 의하여 배달·판매하거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

라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제22조제1항 전단중 “전년도 내수판매량(전년도 내수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내수판매계획량)”을 연간 내수판매량(사업을 개시한 최초 연도에는 당해 연도 내수판매계획량으로 한다)의 일평균 판매량”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연간 내수판매량은 당해월의 전전월부터 역산하여 12월동안의 내수판매량으로 하되, 그 산출방법은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3에서 정하는 원유·석유제품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2. 등유 및 고급휘발유(자동차용휘발유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의 것을 말한다)를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석유비축의무량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이하 “부과금면제비축량”이라 한다)으로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와 다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부과금면제비축량의 비축량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

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항공기 또는 선박에 주입하여 그 항공기 또는 선박의 연료용으로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로서 그 전기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유황중유(탈황설비를 갖춘 일반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유황중유를 포함한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4. 국내생산이 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금의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5.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8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법 제18조제3항”을 “법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①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 및 석유제품 : 1리터당 13원
2.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 : 1톤당 6,908원
3.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유 : 1리터당 20원
4.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휘발유 : 1리터당 36원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을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부대상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부 대상자는 그 부과금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수입한 석유에 대한 부과금 :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2.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부과금 : 당해 석유제품의 판매일(부과금의 부과제외사유가 아닌 용도로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제32조제1항제1호중 “영업범위를”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산업자원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중 “위탁”을 “위탁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6.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제3항 각호의 석유제품을 제외한다)의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를 제외한 석유판매업자의 경우에만 한한다)에 관한 권한

제3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를 검사소에 위탁한다.

1.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수송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

2.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조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수송·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

제3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에 관한 업무처리현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관할관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1) 저장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장시설	700킬로미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	---------------------------------------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부과금 징수에 대한 적용례) 제2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이를 적용하며,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별표 1]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취급석유제품(제14조관련)

구 분	석유판매업의 종류	취급석유제품
등록대상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용제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기가 생산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석유제품(용제 제외) 용제 휘발유·등유·경유 용제 부산물인 석유제품
신고대상	일반판매소 항공유 판매업 특수판매소	등유·경유 항공유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석유 제품

\* 비고 : 윤활유 또는 아스팔트만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또는 신고대상 석유판매업에서 제외된다.

[별표 3]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제23조제1항제1호관련)

품목번호(HSK)	품 명
2709-00-1010-2000	원유
2710-00-1010	자동차휘발유
2710-00-1020	항공휘발유(에비가스를 제외한다)
2710-00-1030	제트연료유
2710-00-1050	나프타
2710-00-1060	엔지엘(NGL)
2710-00-1090	기타(하이솔벤트 및 페트롤리움벤 진을 제외한다)
2710-00-2010	등유
2710-00-2020	제트연료유
2710-00-2090	기타
2710-00-3000	경유
2710-00-4010	경질중유
2710-00-4020	중유
2710-00-4030	병커시유(B-C유)
2710-00-4090	기타
2711-11-0000	천연가스(액상)
2711-19-0000	기타
2711-21-2000	천연가스(가스상)
2711-29-0000	기타
2713-20-0000	석유아스팔트

◆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이유 ◆

석유사업법(石油事業法)의 개정(2000. 1. 28, 법률 제6228호)으로 종전에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던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부과금액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금액을 정하는 한편, 이동판매소의 신고의무제를 폐지하는 등 석유사업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종전에는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가 이동판매소를 운영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유소의 등록과 별도로 이동판매소의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동판매소에 대한 신고제를 폐지함(현행 제2조제5호 삭제 및 영 별표 1).

나.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던 석유의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의 금액을 이 영에서 정하면서 원유·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 및 등유의 판매부과금은 1리터당 13원 및 20원으로, 천연가스의 수입부과금은 1톤당 6,908원으로 종전과 같이 하고, 고급휘발유의 판매부과금은 1리터당 90원에서 36원으로 인하함(영 제24조제1항).

<법제처 제공> 